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77035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론 종결 2015. 12. 9.

판결 선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D에 대하여 6,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B의 요청으로 또는 피고 B을 위하여 2010. 2. 24.부터 2010. 5. 2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D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올라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와 피고 B은 2009. 9.경 멸치잡이를 동업하게 되었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E가 D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B은 그 과정에서 2009. 11. 9. 청구취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의 딸인 F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 B은 2010. 2.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E와 사이에 D에 대한 위 차용금 중 피고 B 부담 부분의 정리를 위하여 E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E는 G(E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인 H의 명의수탁자이다) 명의로 멸치잡이 금어기가 끝나는 2010. 7.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2010. 7.2.부터 2011. 2. 9.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선박을 자신의 멸치잡이에 사용한 사실, 한편 원고는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채무자를 E로 인식한 상태에서 E가 어획한 멸치의 건조를 D 운영의

I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J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D에게 2010. 2. 24. 3,000만 원, 2010. 5. 20. 2,000만 원, 2010. 5. 25.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E와 멀치잡이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하게 되며,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후에 생긴 조합채무에 관하여는 개인재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2인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기존의 공동사업이 모두 E에게 귀속된 이후에 D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비로소 법률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원고가 남은 조합원인 E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B에 대해서도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채권은 기존에 피고 B 및 E가 D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조합채무와는 채무의 종류 및 법적 성격, 발생시기와 채권자를 전혀 달리하므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 B에 대하여 6,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무자력인 피고 B이 2014. 8. 26. 피고 C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명의를 이전된 후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원상회복으로서 6,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철

어 선 목 록

1. 어선의 종류 및 명칭: 동력선, K
1. 어선번호: L
1. 선질 : FRP
1. 총톤수: 9.77톤
1. 기관의 종류와 수: 선박용디젤 기관, 315,000 마력 1대
1. 추진기의 종류와 수: 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1. 진수연월일: 2002. 2. 16.
1. 선적항: 여수시 세구지항
1. 소유자 성명: C 끝.